

개정된 배출부과금 해설

환경청 수질관리과
課長 김 만 호

1.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일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強制하는 직접규제제도가 있고, 둘째는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경제적 誘引이나 부담을 주어 배출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케 하는 경제적 誘導策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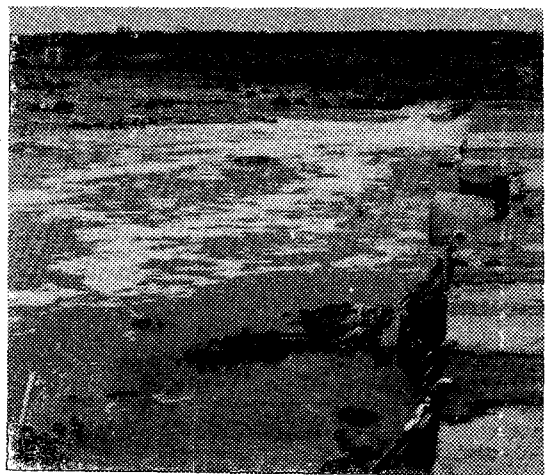
이 경제적 유도책은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출부과금 제도이다.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오염물질 종류별로 농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의 준수를 각 오염원별로 일률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는 장점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환경오염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방대한 오염규제체제와 막대한 비용에 비하면 그 성과가 매우 낮은 단점이 있다.

또한 오염물질처리비용이 각기 다른 모든 배출원으로 하여금 일률적인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대한 배출원의 선택 여지를 봉쇄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률적 기준을 통한 직접규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오염처리비용을 증가시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



과함으로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출부과금제도의 실시는 환경자원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에 價格概念을 도입 기존의 직접규제방식에서 발생하는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목적은 각 사업자들이 그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확보라는 목적도 부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는 기존의 직접규제체제에 보조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배출부과금제도의 원래의 목적인 오염물질 배출기간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내지는 보상에 상당한 비용이 부과되어야 하나 개선기간 또 이전기간만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고, 부과율 또한 너무 낮아서 오염물질 배출 억제 효과가 적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 환경보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고 특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과 부과율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본래의 배출부과금 제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2. 부과방법의 변경

가. 배출부과 기준일의 변경

과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한 이후 부터 개선완료 또는 이전완료일 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법제 19조의 2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배출부과 기준일의 산정은 시행령 제 17조의 11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물질량 산정에서 정하고 있다.

즉 자진신고자의 경우는 신고서상의 비정상가동일로 부터 개선완료 이행신고일 까지 이며, 무신고자의 경우는 오염물질 채취일로 부터 개선완료, 이전완료, 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 이행보고일 까지이다. 이때에 자진신고자와 무신고자에 대하여서는 신고의 성실성의 검토, 각종 혜택과 사업체에 대한 불이익등이 수반되고 있어 이를 구분해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진신고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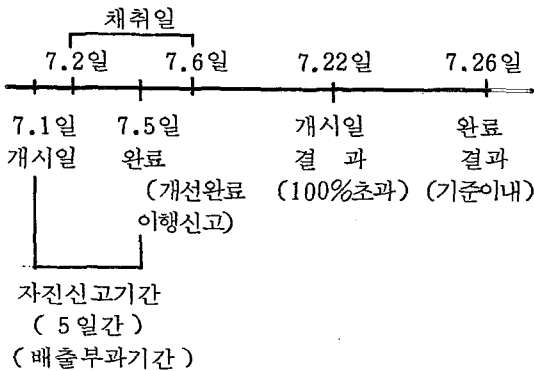
방지시설중 일부(기계 또는 부품등)가 고장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할 경우는 이 사항을 자진신고하여 개선,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는 우선 성실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성실신고자로 판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기재된 개선기간동안 조업(배출부과금은 납부하여야 함)을 허용하고 법제 20조와 법제 66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위반회수별 부과

수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상의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에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성실성 여부이다. 여기서 신고자의 성실성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지시설을 개선, 대체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냐 하는 기간인 것이다. 사업자 스스로 신고한 기간이 지켜지면 성실한 신고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불성실 신고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例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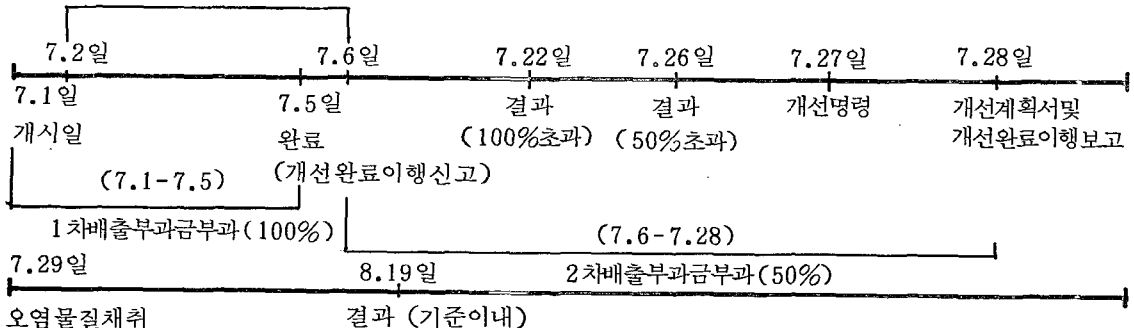


【例1】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을 7.1일부터 7.5일까지로 했을 경우 신고일은 7.1일에 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할 수도 있다. 신고일은 법에서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방지시설을 개선, 대체 하려면 사전에 자금도 마련하고 공사를 할 방지시설 설치업자와 공사계약 하는등 사전 계획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선, 대체 개시일 몇일전에 신고하도록 할

【例2】 채취일



수 있으나 갑자기 돌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 즉시 개선을 해야 함으로 사전신고기간을 주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7.1일에 자진신고를 하면 7.1일 당일에 현지 확인을 갈수도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7.2일에 현장에 도착하여 고장여부와 수리기간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하여야 한다. 7.5일경에는 사업자가 개선완료 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계획한 7.5일에 완료될 수도 있고 7.4일이나 7.6일에 완료될 수도 있다. 만일 7.5일에 완료신고를 하였다면 7.5일이나 7.6일경에 또 현지 방문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오염물질을 채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오염물질의 검사결과는 시·도 보건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환경지청을 거쳐 약 15~20일이 소요된다. 평균 20일간을 소요기간으로 보면 7.2일에 채취한 것은 7.22일에 결과를 알 수 있다. 만일 7.22일에 결과가 기준을 100% 초과하였고, 7.6일에 채취한 결과가 7.26일에 기준치 이내인 적합으로 판명되었다면 이 사업체는 성실한 신고자로 간주되고 위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전신고자의 성실성 여부의 판정은 오염물질 채취후 약 20일이 경과되어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배출부과금은 비정상 가동일 7.1일부터 개선완료신고한 7.5일까지 5일간이 된다.

【例2】의 경우,

자진신고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자는 성실성이 결여되어 자신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실신고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는 7.27일에 개선명령을 해야 하고 7.28일에 개선계획서와 개선완료이행보고를 하였고 7.29일에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8.19일에 결과가 기준이내였다면 1차 배출부과금은 7.1~7.5일간 100% 초과분 즉 7.1일부터 7.5일까지 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7.2일과 7.6일에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였다. 7.2일에 채취한 결과는 7.22일에 가서 100% 초과한 것이 확인되었고, 7.6일에 채취한 것은 7.26일에 결과가 확인되는데 오염도가 개선되

지 아니한 50% 초과로 나왔을 경우, 이 사업체를 성실 사업체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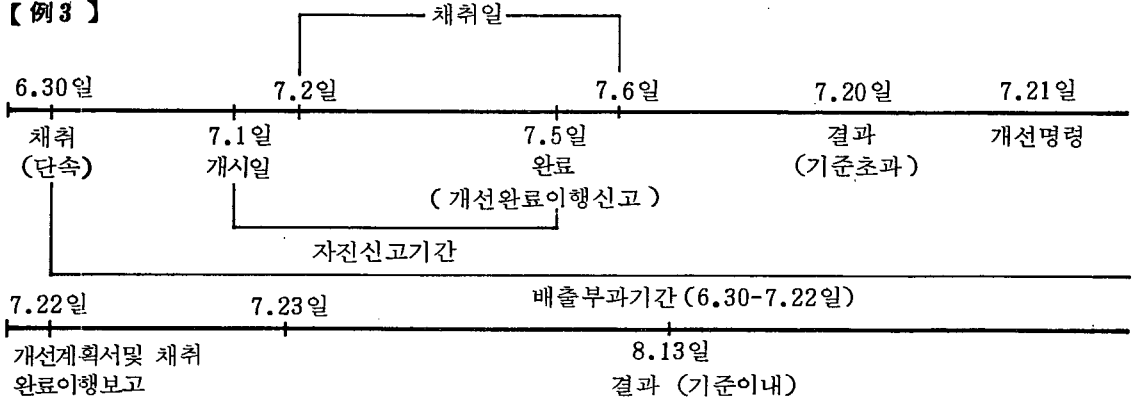
과 2차로는 7.6~7.28일간 50%초과분을 부과해야 한다.

【例3】의 경우,

만일 6.30일에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채취하였고 그 다음날 7.1일부터 7.5일사이 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자신신고를 해 왔을 경우 성실 신고자나 아니냐를 판단하기란 곤란하다. 이런 경우는 일단 신고를 받아서 오염도를 검사해야 한다.

6.30일 채취한 결과가 7.20일에 판명이 돼

【例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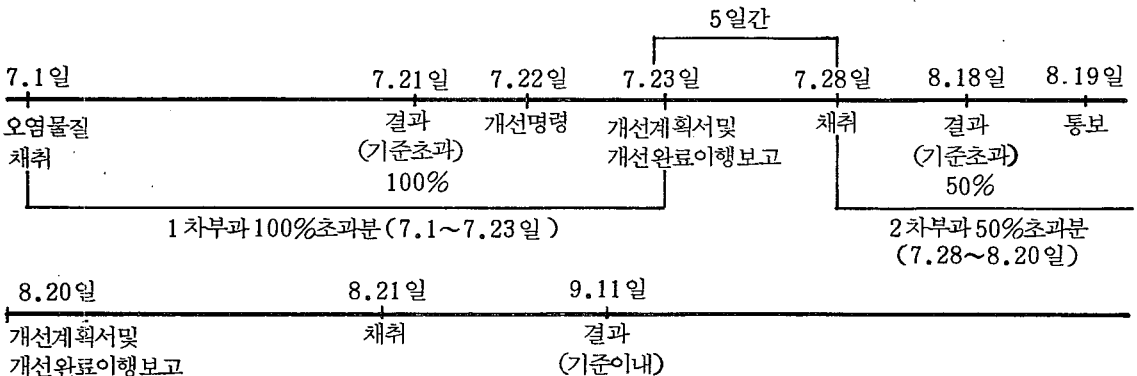
는데 만일 기준치 이하이면 정상적으로 7.22일과 7.26일 결과치로 처리하면 되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성실신고자로 간주할 수 없고 개선명령을 하고 7.22일에 개선계획서 및 완료이행 보고를 받아 8.13에 결과가 기준 이내이면 6.30~7.22일 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성실신고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됨으로 사업자의 성실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무신고자의 경우

무신고자의 경우의 배출부과금 산정기간은 오



염물질을 채취한 날로부터 개선완료, 이전완료
조업정지 및 폐쇄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까지
로 한다.

이때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완료이행 보고는
중전의 방법과 동일하며 자진신고자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7.1일에 오염물질을 채취하였고
그 결과가 20일 이후인 7.21일에 나왔는데
100% 기준초과였다면 7.22일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7.23일에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 이행
보고를 하여 5일후인 7.28일에 오염물질을 채
취하여 8.18일 실험결과가 기준이내이면 이 업
소는 7.1~7.23일까지 100% 초과분만 납부
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8.18일 결과가 역시
기준초과 50%였다면 다시 이를 8.19일 결과
통보하면서 개선촉구하여야 하고 8.20일 개선
계획서 및 개선완료이행보고를 하고 8.21일 오
염물질 채취를 하여 9.11일 결과가 기준이내
였다면 2차 배출부과금은 개선완료보고 익일인
7.24일 부터 개선완료 이행보고를 한 8.20일
까지 산정해야 한다. 이때 문제는 7.24~7.28
일 사이의 5일간의 배출부과금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5일간에 대해서
는 1차 100% 초과분에 계산하지 말고 실지
로 일부 개선된 2차 50% 초과분에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절차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
한 지연은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기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선
완료 이후 확인기간(5일 이내)이내의 빠른 시일
내에 시료 채취토록 노력해야 한다.

나. 무허가 배출시설도 부과대상 적용

개정전 법에는 무허가 배출시설은 사업장 전
체가 무허가이든, 일부 시설이 무허가이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 이유로서는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면 개선명령을 해야만 부
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법제 15조에 의한 배
출시설 허가업소에 한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제 19조의 2(배출부과금)에
는 법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수의 경
우는 이러한 예가 적으나 대기배출 시설에는 적
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시 적용 범위
확대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11의 ③항을 신설하여 별표 3으로
규정 하였다.

중전에는 특정유해물질인 경우 배출량을 소
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하던 것을 네째자리



〈海水汚染샘플채취〉

까지 계산 하고, 일반 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는 계산하지 아니하던 것을 첫째자리 까지 계산
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다.

예로서 카드뮴(Cd)의 일일 배출량이 0.0009
kg이었다면 중전에는 소수점 세째자리 까지 계
산을 하여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해당이 되게 되었다.

또한 BOD인 경우 일일 배출량이 0.9kg 이
었다면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계산을 하게 됨으
로 부과금 부과 대상이 된다.

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인상

시행령 제 17조의 10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의 ②항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별표 2] 중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만 일부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초과율 300% 이상과 400% 이상인 경우는 조업중지도 되어 있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300%~400%미만에는 4.5 계수 400%이상인 경우는 9.0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부과금액을 인상 시켰다.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인상

개정된 시행령 제 17조의 12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①항에는 시행년도의 지수를 2.0736으로 하고 다음년도 부터는 부과금 산정지수에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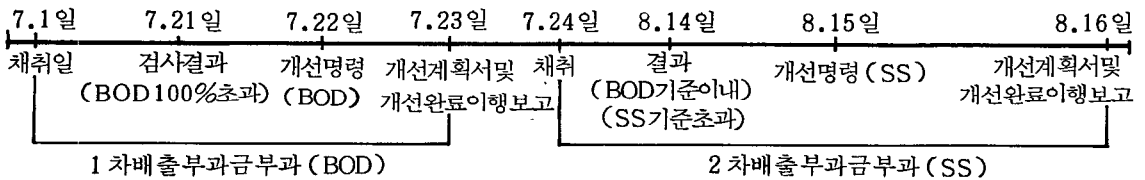
즉 시행년도인 1987년의 산정지수는 2.0736이고 1988년 부터는 환경청장이 별도로 고시하

는 지수를 곱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

바.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신설

종전 법에는 성실 가동업체와 비정상 가동업체간의 차등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연중 수차 위반하는 업체에 가중부과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위반회수에 따라 부과계수를 증가시키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위반회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도록 하였다. 범시행령 제 17조의 12의 ②에서 위반회수별 부과금 부과계수는 위반회수 0의 경우를 100/100으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5/100을 곱한 것으로 하되, 그 산정기간은 그 회계년도 (1987.6.4 - 1988.12.31)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위반회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반의 개념은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전명령, 폐쇄명령을 받은 회수를 말한다.

예로서 7.1일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그 결과가 7.21일에 나와서 BOD항목이 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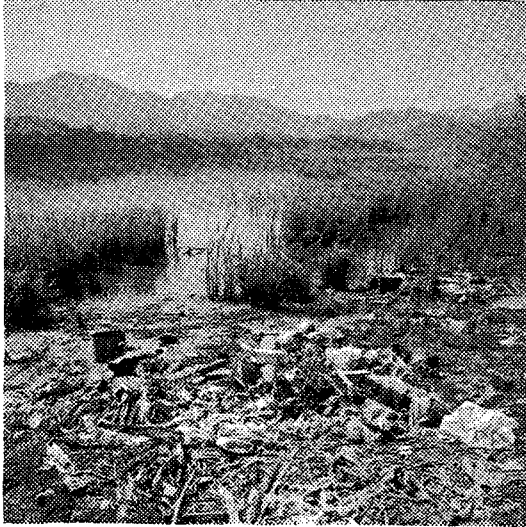


초과였고 7.23일 개선완료이행보고를 하여 7.24일 채취를 한 것이 8.14일 BOD항목은 기준이내 였으나 새로이 SS항목이 기준초과였다면 기준초과한 SS항목은 다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별개의 오염물질로 2회개선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위반회수는 2회가 된다. 또한 같은 사업장내에서 대기의 SO₂ 항목과 악취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같은 대기항목이기 때문에 각 1회가 된다. 그러나 배출부과대상이 아닌 오염물질등 (수소이온 농도, 노말핵산, 망간, 대장균, 색도, 온도 일산화탄소, 염소, 소음, 진동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개정된 환경보전법내의 배출부과금내용은 ①배출부과율이 신설 및 인상되었고 ②배출부과대상이 확대되었으며 ③배출부과기간이 연장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러한 결과는 배출부과금의 인상을 의미하는데 과거에 비하여 약 100~20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배출부과금제도의 기본적인 사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



물질을 스스로 배출 억제하는 유인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과금의 활용

사업체에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환경보전법 제 62조 2에 의하여 환경오염 방지기금에 납입토

록 되어 있다.

이 방지기금은 금년에 발족된 환경오염 방지 사업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각 사업체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용자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배출부과금만으

〈환경오염방지기금 조성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계	'83	'84	'85	'86
계	47,203	71	6,363	9,957	13,539
정부출연금	36,500	-	5,000	8,000	10,000
배출부과금	7,927	71	1,156	1,433	2,267
기 타	2,776		207	524	1,272

로는 용자자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매년 정부에서 50억~100억을 출연 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자조건을 보면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요금액의 70%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방지기금이 부족하여 필요한 업체에 충분히 용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지시설자금별 내역〉

구분 \ 자금별	환경오염방지기금	국민투자기금	정책금융자금
기금조성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금 및 배출부과금 ○환경보전법 제 19조 2, 제 62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제 2조 1 항 7 호 ○상공부고시제 87-2 호 ('87.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공해방지 시설자금 ○중소기업에 대한금융지원요령 제 7 조
용자대상	방지시설 설치, 대체, 개선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사용한 자로 환경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소기업으로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
용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사업비의 70%이내)	업체당 20억원 이내 (소요액의 100%이내)	업체당 무제한 (소요자금의 100%이내)
상환조건	3년거치 7년상환 (연 7%)	3년거치 5년상환 (연 11%)	10년이내 상환 (연 10-11%)
용자 실시일	'84. 10.	'87. 2. 14.	'87. 4. 27.

〈환경오염방지기금 대부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84	'85	'86	'87 (5월말)
실업체수	411	70	102	156	83
적금액	32,015	6,350	5,752	12,587	7,32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청에서는 금년초에 국민투자기금 525억원과 정책금융(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500억원을 확보해 놓았고 8월중에는 석유사업기금중에서 별도로 약 50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총 1,800억원을 마련, 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융자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중 은행대출에 필요한 담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의, 공해방지시설을 후치담보로 하여 쉽게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방지기금 사용에 따른 어려

움을 해소해 줄 것이다.

4. 결 언

배출부과금제도가 1983년 9월 부터 시행해온 이래 이제는 이 제도가 업계내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규제도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배출부과금 부과액수가 너무 적었고 이를 악용하는 업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에 개정된 배출부과금제도는 부과율을 대폭 인상하였기 때문에 배출부과금만 내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업소에서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노력한 만큼 「더 맑게 더 푸르게」 될 것이다. *

新明心寶鑑 2

司馬溫公이 曰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야
 以爲子孫之計也나라

- 繼善篇중에서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덕(德)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교를 하느니만 같지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즉, 자손이 오래도록 잘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책을 남겨주느니 보다 남 모르는 가운데 선행(善行)을 하고 인덕(仁德)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한 것이다.

사마온공(司馬溫公) 이름은 광(光), 자(字)는 군실(君實), 호는 우부(迂夫), 시호는 문정(文正), 세상에서 사마온공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북송(北宋)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다.